

5. 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中改正令

大統領令 第13,971號 1993. 8. 30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 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분납, 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현재는 저당권설정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